



趣旨説明

渡部, 昭男

多胡, 太佑

(Issue Date)

2025-01-31

(Resource Type)

conference object

(Version)

Author's Original

(URL)

<https://hdl.handle.net/20.500.14094/0100492926>



日本国憲法^{1947施行}第26条「その能力に応じて」の解釈の変遷

- ・ 憲法学の通説：能力程度主義・・・教育を受けるに必要な能力（学力・健康など）による差別を容認
一方で、教育基本法1947：その能力と適性に応ずる教育（教育基本法案文1946）
法学協会1953『註解日本国憲法』：個人差に応ずる教育・・・天分を伸ばし、個性を完成する・・・
朝日訴訟1960東京地裁浅沼判決：憲法第25条（生存権／生活保護）につき「必要即応の原則」判示
- ・ 日本教育法学会設立1970年
- ・ 牧杵名1971『教育権』：（能力に不利のある障害児は）それだけ十分な条件で教育保障されるべき
- ・ 清水寛1972「障害者の『生存と教育』の権利—発達権保障の立場から—」『日本教育法学会年報』（1）
- ・ 清水寛&三島敏男1975『障害児の教育権保障』：発達に必要かつ適切な
- ・ 兼子仁1978『教育法〔新版〕』：すべての子どもが能力を発達させうる教育を受ける権利（能力発達上の必要に応じた教育）、度の重い障害児こそ人間発達権の国家的保障を強く要求しうる
- ・ 清水寛1981「『生存＝発達権』保障理念の展開」『発達保障思想の形成』（1979「発達する権利とその保障」を再録するにあたり改題）
- ・ 渡部昭男2008「『能力原理』から『必要原理』への転換」『障害者問題研究』36(1)：個々人の全面的に開かれた自由な発達の必要に応ずる学習保障への権利

일본국헌법¹⁹⁴⁷시행제26조 “그 능력에 따라” 해석의 변천

- 헌법학 통설: **능력정도**주의...교육을 받기 위해 필요한 능력(학력·건강 등)에 따른 차별을 용인
한편, 교육기본법 1947: 그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교육기본법안문 1946)
법학 협회 1953 『주해 일본국헌법』: **개인 차에 따른** 교육...타고난 재능을 개발하고 개성을 완성하는...
아사히 소송 1960 도쿄지방법원 아사누마 판결: 헌법 제25조(생존권/생활보호)에 ‘**필요 즉응의 원칙**’ 판시
- **일본교육법학회 설립 1970년**
- 마키 마사나 1971 『교육권』: (불리한 능력의 장애아는) **그에 따른 충분한** 조건 속에서 교육이 보장되어야 함
- 시미즈 히로시 1972 「장애인의 ‘생존과 교육’의 권리—**발달권** 보장의 입장에서—」 『일본교육법학회연보』 (1)
- 시미즈 히로시&미시마 토시오 1975 『장애아의 교육권 보장』: **발달에 필요하고 적절한**
- 카네코 마사시 1978 『교육법[신판]』: 모든 아동이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교육을 받을 권리(**능력 발달상 필요에 따른 교육**), 중증 장애아야말로 인간 발달권의 국가적 보장을 강하게 요구할 수 있음
- 시미즈 히로시 1981 「‘**생존=발달권**’ 보장 이념의 전개」 『발달 보장 사상의 형성』 (1979 ‘발달하는 권리와 그 보장’을 재수록하며 제목 변경)
- 와타나베 아키오 2008 「‘**능력 원리**’에서 ‘**필요 원리**’로의 전환」 『장애인문제연구』 36(1): 개개인에게 **전면적으로 열린 자유로운 발달 필요에 대응하는 학습 보장에 대한 권리**

表 1 「発達権の法的根拠」の8分類

憲法 14 条 (法の下での平等)・25 条 1 項 (生存権)	
・26 条 1 項 (教育を受ける権利)	…………… 清水寛
憲法 25 条 1 項・26 条 1 項	…………… 一番ヶ瀬康子、日弁連
憲法 26 条 1 項・27 条 1 項 (勤労の権利)	…………… 飯野節夫、牧証名
憲法 26 条 1 項	…………… 永井憲一
憲法 13 条後段 (生命・自由・幸福追求権の尊重)・25 条 1 項	
・26 条 1 項	…………… 堀尾輝久
憲法 13 条後段・26 条 1 項	…… 兼子仁、第一東京弁護士会
憲法 13 条前段 (個人の尊重)・子どもの権利条約 6 条	…………… 福田雅章、山口直也
憲法 23 条 (学問の自由)・13~22 条 (「国民の権利及び義務」の総体)	
・25 条 2 項 (国の生存権保障義務)・26 条 1 項・27 条 1 項	…………… 勝野充行

(出典：服部朗 2002 「成長発達権の生成」)

<표 1> ‘발달권의 법적 근거’의 8 분류

헌법 14 조(법 아래의 평등)・25 조 1 항(생존권)	
・26 조 1 항(교육을 받을 권리)	…………… 시미즈 히로시
헌법 25 조 1 항・26 조 1 항	…… 이치방가세 야스코(一番ヶ瀬康子), 일본변호사연합회
헌법 26 조 1 항・27 조 1 항(근로의 권리)	
…………… 이이노 세츠오(飯野節夫), 마키 마사나(牧証名)	
헌법 26 조 1 항	…………… 나가이 켄이치(永井憲一)
헌법 13 조 후단(생명・자유・행복 추구권의 존중)	
・25 조 1 항・26 조 1 항	…… 나가오 테루히사(堀尾輝久)
헌법 13 조 후단・26 조 1 항	…………… 카네코 마사시(兼子仁), 제 1 도쿄변호사회
헌법 13 조 전단(개인의 존중)・아동 권리 조약 6 조	
…………… 후쿠다 마사아키(福田雅章), 아마구치 나오타(山口直也)	
헌법 23 조(학문의 자유)・13~22 조(‘국민의 권리 및 의무’의 총체)	
・25 조 2 항(국가의 생존권 보장 의무)・26 조 1 항・27 조 1 항	
…………… 카츠노 미츠유키(勝野充行)	

(翻訳：多胡太佑)